18세기 량반의 신분적특권의 감소를 보여주는 몇가지 측면에 대한 력사적고찰

강 명 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정일선집》제2권 중보판 35폐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신분제도를 반대하는 피압박대중의 줄기찬 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에 의하여 량반신분제도에서는 전시기에 찾아볼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18세기에 신분제도변화의 흐름을 타고 엄격하게 존재하고있던 문무차별, 지방 및 적서차별 등 량반신분충안에서의 여러가지 차별들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여갔 을뿐아니라 량반의 신분적징표를 보여주는 여러 측면들도 점차 감소되여간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조선봉건왕조의 전통 적인 신분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 였다.

이 글에서는 18세기에 량반의 신분적특 권의 감소를 옷차림새와 가마, 무덤 등 몇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자료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량반신분제도의 변화가 급격히 촉진 되여간 력사적사실들과 그 요인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까지만 하여도 봉건 통치배들에 의해 강요된 봉건적인 신분질 서는 매우 엄격하였으며 그에 기초한 봉 건적특권은 오직 량반지배계급들에게만 해 당되여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계급신분관계가 전시기보다 더 문란해지면서 량반의 특권적한계가 종전처럼 절대적인것으로 되여있지 않았다. 이 시기 량반의 신분적특권이 감소되여간것은 옷차림새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 시기 량반의 신분적특권이 감소되여 갔다는것은 첫째로, 옷차림제도에서 량반 과 다른 신분충들과의 구분이 명백해지지 않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옷은 입는 사람들의 성격과 해당 시대의 발전, 사회의 면모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력대 봉건사회에서는 량반과 량인, 노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할수 없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옷차림에서 량 반과 중인, 량인 등 여러 신분, 계층사이 의 계선과 구분이 헝클어지고 명백하지 않 았다. 그것은 이 시기 계급신분관계가 점 차 문란되여 간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이 시기 량반과 다른 피지배신분충들과 의 옷차림구분이 명백해지지 않았다는것 은 우선 량인이나 노비들이 량반들처럼 도 포나 창옷을 착용하고 다닌데서 찾아볼수 있다.

임진조국전쟁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일부 량인, 노비들의 벼슬진출은 18세기에 들어와 매관, 매직, 족보위조 등 여러가지 방 법으로 진행되여 량반으로 행세하는 피지 배계급출신의 수는 상당히 늘어났다.

이들의 량반행세는 막을수 없는 현상으로 되여갔으며 그들의 본을 따서 많은 사람들도 량반차림새를 하고 다니였다.

《우리 나라 의복제도는 총모와 창옷으로서 출신을 나타내였는데…근래에는 시정, 겸종(시종군), 하인, 천인들이 모두 도포를 입고 당혜(가죽신의 일종)를 끌며 창옷을 입고 총모를 쓰기때문에 무릇 드나드는것을 보면 모두 선비(량반)출신모양이다.》라고 전하였다.(《일성록》 정종 10년 1786년 정월 22일)

자료에서 보는것처럼 18세기 량반이 아닌 하인 시종군 등 천인신분을 가진 일부사람들이 도포를 입고 총모를 쓰고 당혜를 착용하였다는데 이것은 전 시기에 찾아볼수 없는 현상이다.

원래 큰 창옷과 비슷한 도포는 량반지 배계급들만이 입고다닐수 있었으나 조선 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 신분이 낮은 사람 들도 도포를 입고 다니였으므로 겉으로 보 기에는 량반과 다름이 없었다. 이 시기에 는 신분적으로 가장 천시당하던 상인들과 중들도 량반차림을 하고 다녔다.

1783년 6월 지평 신기가 시정인들이 재상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량반이라고 자처하면서 《…상인과 중들은 도포를 입고 상민과 천인들은 사대부(량반)를 모욕하며 노비들은 상전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한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정조실록》권15 7년 6월 기묘)

량반통치배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량 인들과 노비들이 도포를 입고 다니는것을 단속통체하는 한편 그것을 심하게 어긴자 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적용한다고 공포 하였으나 이들의 량반옷차림《행세》를 막 아낼수 없었다.

이 시기 량반과 다른 피지배신분충들과 의 옷차림구분이 명백해지지 않았다는것 은 또한 량인이나 노비들이 량반들처럼 쓰 개를 사용하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는 쓰개가 계급신 분에 따라 각각 달랐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량반귀족들은 50 죽 초립을 쓰고 부죽립(가늘게 짜갠 참대 로 엮은 우에 천을 붙여바른 검정색의 갓) 을 썼으며 평민은 30죽 초립이나 승결립(베 노를 맺어서 만든 갓)을 쓰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경국대전》에 규정된 쓰개의 규범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천한 신분층들이 량반귀족들이 사용하는 쓰 개를 리용하는 현상이 농후해졌다. 기록에는 《…초립(풀로 엮어만든 누런색 갈의 갓)이란 옛날 풍속에 따르던 갓이다. 그 러나 당시에 사족(량반)이나 평민의 머리에 쓰는 갓에 구분이 있었다는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에는 우로 재상으로부터 아래 로 아전에 이르기까지 다 제주도에서 만든 300술이상의 가는 총모를 쓴다.》라고 전하 고있다.(《목민심서》 7권 례전 륙조)

이러한 사실은 신분의 징표를 나타내는 데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던 쓰개 가 이 시기에 량반이나 천한신분의 구별 없이 자기 마음내키는대로 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량반과 다른 피지배계급신분충 들과의 옷차림 구분이 명백해지지 않았다 는것은 또한 량인이나 노비들이 량반들만 신을수 있는 신을 신고 다닌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이 시기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도 당 헤(가죽신의 일종)를 신고 다니였다.

당혜는 원래 법적으로 극소수의 특권량 반들만이 신을수 있는것이였다.

당시 신발도 계급신분에 의해서 구별되고 제한되였기때문에 일반평민들은 여름, 겨울 할것없이 사철 짚신과 같은 풀로 만 든 신발밖에 신지 못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봉건적신분규범이 문란됨에 따라 량인은 물론 천인들도 당혜 를 신고다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1786년 훈련원 첨정 리정범이 《명분 두 글자는 나라의 큰 정사인데 근래에 상한(상민)들은 빈부를 막론하고 감히 당혜를 끌고 상하가 서로 혼잡된다.》라고 한것과 같은 해 선전관 홍변주도 《근래에 시종, 겸종(시중군),여대(하인), 천인들이 모두 당혜를 끈다.》라고 한것은 당시 당혜를 평민이나 천인들속에서 적지 않게 신고 다니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성록》 정종 10년 정월 22일)

이와 같이 량반들만이 사용하던 도포나

쓰개, 당혜를 량인은 물론 심지어 노비들 까지도 사용하게 된것은 량반들의 신분적 특권이 상실되었다는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아전에게서만 나타 난것이 아니고 일반 량인들속에서도 나타 났는데 1786년 어느 한 고을에서 올린 장 계에서 평민들과 량반과의 명분이 뚜렷해 지지 않고있다고 한데서 그대로 찾아볼수 있다.(《일성록》 정종 10년 정월 22일)

이 모든 사실은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이르러 봉건적계급신분관계가 점차 무너 져가고 이에 따라 량반과 량인, 노비를 비 롯한 여러 신분, 계층사이의 계선이 명백 치 않고 흐려졌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 고있다.

이 시기 량반의 신분적특권이 감소되여 갔다는것은 둘째로, 량반들만이 사용하던 가마를 량인이나 노비를 비롯한 다른 피 지배신분들이 사용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봉건사회에서 량반들은 저들만이 신 분적특권을 향유할 목적으로 가마까지도 신 분적규례의 매개물로 리용하였다. 그러면 서 피지배계급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것을 사용할수 없게 엄격히 제한하였다.

지어 량반통치배들은 량반안에서도 당 상관이상의 품계를 가진자들과 그 처들만 이 가마를 사용하도록 하고 당하관이나 고 을원(도감사는 제외)도사, 찰방벼슬을 하 는 자들에게도 감히 가마를 타고 다닐수 없 게 하였다.(《수교집록》권5 형전 금제)

그러나 18세기에 량반의 신분적특권이 감소되여감에 따라 가마제도도 점차 문란 되여나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선 중인과 서얼들속에서 가마 를 타고 다니는 현상이 나타난것이였다.

1713년 5월 시독관 김유는 《부유한 중 인과 시정인들은 실교를 타고 다녔는데 그 로 인하여 명분과 등급이 점점 손상되고 쇠 퇴되여갔다.》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숙 종 39년 윤 5월 19일)

이것은 지배계급신분안에서 신분, 계층 들사이의 차이가 심히 흐려졌다는것을 의 미하는것으로서 종전에는 찾아볼수 없는 것이였다.

1791년 8월에 지평 박재순은 이에 대하여 《…고을의 소민(상민)들과 시집가는 녀자들이 실교를 타고 가며 심지어 관예(관청에 속한 종), 역졸들도 그렇게 한다. 그가운데서 심한자는 평상시 왕래할 때에도실교를 탄다.》라고 하였다.(《정조실록》 권23 15년 8월 갑인)

자료에서 보는것처럼 이전시기에는 감히 찾아볼수 없었던 량인이나 지어 종과 역 졸까지도 특권량반들만 리용하던 가마를 사용하였다는것은 량반에 대한 특권적관념 과 규례가 허물어져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량반의 신분적특권이 감소되여 갔다는것은 셋째로, 무덤형식에서 량반과 량인, 노비신분들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데 서도 찾아볼수 있다.

전시기까지만 하여도 량반통치배들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쓰는데서도 계급신분에 따르는 엄격한 제한과 차이를 두게 하였다. 그목적은 저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지배계급의 신분적위신을 과시하자는데 있었다.

특히 무덤구역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량반통치배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넓은 자 리를 차지하도록 규정해놓았다. 《경국대 전》에 의하면 종친 1품은 4면을 각각 100 보로 정하고 그아래는 각각 10보씩 낮추 정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무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분상 저들의 지배밑에 놓여있다는 판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특히 량반통치배들은 무덤을 쓰는데서 저들만이 많은 재부를 들여 석인(石人)과 망주석, 큰 비석 등을 세우고 상석을 놓도록 하였다.

한편 량인들과 천인들에 대해서는 무덤에 비석과 석인을 세우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가혹한 형벌을 적용하고 재산을 몰수 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이러한 법적규제가 준수되지 못하였으며 허울만 남게 되였다. 당시 무덤사용에서 량반들의 특권이 상실되고있는 현상은 다음의 자료에 잘 나타나있다. 《국가의 규률이 해이되고 사치가 퍼져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법이 날로 심해진다. 근래의 의관, 역관, 리서, 공노비, 사노비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데 모두 길이가 5~6자나 되며 앞뒤면에 직함을 몰래 기록하여 다 재상의 비석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한성부로 하여금 일일이 엄격히 조사하여 위반하는자를 엄격히 엄벌에 처하는 한편 비석은 없애버리도록 할것을 국왕에게 상소하였다. (《현종실록》 권6 4년 5월 신미)

이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신분적으로 천인, 의관, 역관은 물론 심지어 공노비와 사노비들까지도 무덤사용에서 비석을 세우고 직함을 써놓아 마치 재상의 무덤과 같아 보였다는것은 종전에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현상이였다.

그리하여 량반들은 모두 고을들에 알려일일이 조사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한자는 물론 사용한 사람도 엄벌에 처하고 비석을 뽑아버리도록 봉건정부에 상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1776년 11월 시독관 김현경이 《지금 천인들의무덤에 비석을 세우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현상이 잘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아우성을 친데서 그대로 알수 있다.(《정조실록》권2 즉위년 11월 정해)

이것은 피지배충과 량반지배충사이의 신 분적구분이 점차 허물어지고 그 계선이 뚜 렷해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전반기까지만 하 여도 매우 엄격한 규제로 남아있던 량반 의 신분적규범이 이 시기에 점차 문란해 져 여러 계급, 계층사이의 구분이 뚜렷해 지지 않고있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여러 측면에서 량반의 신분 적특권이 감소되여간 리유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우선 이 시기에 량반의 신분적 징표가 뚜렷해지지 못한것과 중요하게 관 련되여있었다.

량반의 신분적징표가 뚜렷해지지 못한 것은 벼슬등급제도가 문란해진데서 그대 로 나타났다. 량반신분과 벼슬은 서로 뗼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 은 벼슬이 량반신분의 가장 중요한 징표 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량반들의 신분적징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계층적인 품계를 제정 하고 높고 중요한 벼슬자리들에는 절대로 량반이 아닌 다른 신분층이 끼여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도적장치들을 만들어 놓았다. 특히 피지배계급신분인 량인이나 노비는 말할것도 없고 같은 지배계급에 속 하는 중인이나 아전들에게도 문관 당상직 만은 절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와서 벼슬등급제도가 신분적기준에 구애되지 않고 문관 당상직 에까지 량인이나 노비들이 적지 않게 끼 여들어감으로써 특권신분으로서의 량반의 《명분》이 뚜렷해지지 못하였다.

임진조국전쟁이후 노비나 량인들이 쌀과 무명 등을 바치고 벼슬을 받는것으로 부터 시작된 비량반들의 벼슬진출은 18세기에 당상관의 벼슬을 사거나 실직벼슬까지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민심서》는 량인가운데서 부유한 충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가계까지 고치는 현상이 농후해진데 대하여 《…공신 아무개재상이 자기8 대조라고 부르고 혹은 부마도의 아무개가 자기 9대조라고 부르는데…심한자는

왕실의 가계까지 곁들어 광평대군을 자기 8대조라고 하다.》, 《…문과에 급제하여 우 로는 랑서(정3품이상의 관리)에 이르면 거 기서 직첩(벼슬임명장)을 받는다.》고 하면 서 당시 벼슬의 매매현상에 대하여 그대 로 전하고있다.(《목민심서》 권 제8 병전 륙 조 참정)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18세기에 량인들까지 량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거시험에 쉽게 급제하여 당상관이상의 벼슬을 쉽게 받았으며 공신이나 부마 지어 왕족의 이름까지 자기 족보에 올려 지배계급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발전하는 상품화폐경제가 신분관계에 깊이 침투하여 량반의 경제생 활에 영향을 준것과도 관련되여있었다.

17세기이후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돈을 축적한 부유한 량인이나 노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들은 토지매매를 통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차지함으로써 토지소유관계에서 량반들과 세력을 견주게 되였다.

상품화폐관계발전에 따라설수 없었던 중소토지소유자들인 량반들은 고정된 토지에 의거하여 수입되는 량곡만으로는 생활을 충족시킬수 없었다. 특히 관혼상제를 한번만 치루어도 많은 돈을 써야 했던 당시

실정에서 경제적으로 빈약한 량반들은 토지를 잃고 급격히 몰락하는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1868년 11월 5일 의정부에서 국왕에게 낸 보고서에는 《각 고을에서 향반(지방량 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벼슬 하던 사람들의 자손인데 요즘은 미천한자 들이 조금만 재산이 있기만 하면 의례히 량 반대렬에 끼여든다.》고 하였다.(《고종실 록》권 55년 11월 5일)

이 사실을 통하여 당시 돈있는자들속에 서 량반행세를 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 조로 되여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것은 이전시기 량반신분만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고 거들먹거리던 일부 량 반충들속에서 발전하는 상품화폐경제에 따라설수 없었던것으로 하여 량인이나 다름 없는 처지에 굴러떨어지고 반면에 경제적 으로 부유한 충들이 량반의 차림새를 본 따거나 가마, 무덤형식에까지 침투하여왔 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량반신분제도의 변화로 전통적이고 세습적인 량반의 신분적특권은 차림 새와 여러 측면에서 종전에 찾아볼수 없 게 크게 감소되여갔던것이다.

력사적사실은 량반들이야말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유린한 착취 자들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